

#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8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31.

발의자 : 박찬우 · 홍문표 · 정용기  
함진규 · 박덕흠 · 이해찬  
김현아 · 박완수 · 이완영  
이명수 · 이현재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,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시스템, 카드결제기,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콜서비스 시스템, 카드결제기,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(안 제12조 제1항 제4호 신설).

##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콜서비스 시스템, 카드결제기,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)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  1. ~ 3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12조(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) 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 1. ~ 3. (현행과 같음)  <u>4. 콜서비스 시스템, 카드결제</u> <u>기,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</u> <u>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</u> <u>및 운영비</u>
4. (생 략)	<u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